

군포도시공사 제2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



2026년 4월 29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74 호

## 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임직원의 보수는 지방공기업법,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,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5조(초임호봉의 확정) 중 ‘별표1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직종·직급별 호봉

직 종	직 급 별	호 봉	
		최 저	최 고
일 반 직	3 ~ 9급	1	30

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일반직(운영직렬) 근로자가 만 61세 및 만 62세에 해당하는 나이에 도달하는 해 1월 1일부터 다음 각호의 호봉으로 정정한다. 단, 해당 시점 당시 호봉이 다음 각호의 호봉 미만인 경우 본래 호봉으로 한다.

1. 만 61세: 당해직급의 5호봉

2. 만 62세: 당해직급의 4호봉

제19조(기본급) 중 ‘별표5’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직원의 기본급기준표

(월지급액, 단위: 원)

공무원 공 사	기 준 표						비 고
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
(생 략)							(생 략)
일반직 6급					당해호봉상	당해호봉상	
일반직 7급						당해호봉상	
일반직 8급						당해호봉 75~96%	
일반직 9급						구간비율 산 정	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6. 5. 1.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경 영 기 획 실 장
입	직 위 성 명
안	경 영 기 획 실 장 과 성 우
자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
	이 유 경 ( 3 9 0 - 7 6 4 3 )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
<p><b>제2조(적용범위)</b>                     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공기업법,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,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 <u>다만, 업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.</u></p> <p><b>제5조(초임호봉의 획정)</b>                      [별표 1]                      직종·직급별 호봉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직종</th> <th rowspan="2">직급별</th> <th colspan="2">호봉</th> </tr> <tr> <th>최저</th> <th>최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직</td> <td>3 ~ 7급</td> <td>1</td> <td>3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b>제6조(호봉의 재획정)</b>                      ④ &lt;신설&gt;</p>	직종	직급별	호봉		최저	최고	일반직	3 ~ 7급	1	30	<p><b>제2조(적용범위)</b>                     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공기업법,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,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                      &lt;삭제&gt;</p> <p><b>제5조(초임호봉의 획정)</b>                      [별표 1]                      직종·직급별 호봉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직종</th> <th rowspan="2">직급별</th> <th colspan="2">호봉</th> </tr> <tr> <th>최저</th> <th>최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직</td> <td>3 ~ 9급</td> <td>1</td> <td>3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b>제6조(호봉의 재획정)</b>                      ④ <u>일반직(운영직렬) 근로자가 만 61세 및 만 62세에 해당하는 나이에 도달하는 해 1월 1일부터 다음 각호의 호봉으로 정정한다. 단, 해당 시점 당시 호봉이 다음 각호의 호봉 미만인 경우 본래 호봉으로 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1. 만 61세: 당해직급의 5호봉                      2. 만 62세: 당해직급의 4호봉</p>	직종	직급별	호봉		최저	최고	일반직	3 ~ 9급	1	30
직종			직급별	호봉																	
	최저	최고																			
일반직	3 ~ 7급	1	30																		
직종	직급별	호봉																			
		최저	최고																		
일반직	3 ~ 9급	1	30																		

## 현 행

### 제19조(기본급)

[별표5]

#### 직원의 기본급기준표

(월지급액, 단위: 원)

공무원 공 단	기 준 표						비 고
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
(생략)							(생략)
일반직 6급					당해호봉 상	당	
일반직 7급						당해호봉 상	

## 개 정 안

### 제19조(기본급)

[별표5]

#### 직원의 기본급기준표

(월지급액, 단위: 원)

공무원 공 사	기 준 표						비 고
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
(생략)							(생략)
일반직 6급					당해호봉 상	당	
일반직 7급						당해호봉 상	
일반직 8급						당해호봉 75~96%	
일반직 9급						구간비율 산 정	